

고충처리 청구서

고충처리 청구서

①청 구 명	주식 투자 실패 60대 퇴직자 극단적 선택 기사 정정 청구			
청구인	②성명 또는 단체명	고인의 유족	③대표자 성명	불명
	④주소 또는 소재지		⑤생년월일	
	⑥전화번호		⑦E-mail	
보도 내역	⑧보도일자	2020년 3월 31일		
	⑨제목/보도면	주식 투자 실패 60대 퇴직자 극단적 선택/ 6면		
	⑩보도가 있음을 안 날	2020년 3월 31일		
⑪청구 이유 (별지 작성 가능)	청구인은 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위법행위에 의해 관련 내용을 입수했으며 유서에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건을 마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단정지어 추측성 기사를 냈다며 공익적 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언론 중재와 함께 고충을 청구.			
⑫구제 요청 내용	기사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, 인터넷 판 등에서 삭제해줄 것			

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.

2020년 3월 31일

신청인: 불명 (서명 또는 인)

광주일보 귀하